

基本合意書 以後 時代의 南北韓關係 展望

梁 榮 植*

목 차

1. 序 言
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和解協力の 異程表
3. 「基本合意書」以後 時代의 南北韓關係 展望
4. 結 言

“1992년 壬申年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偉業을 실현하는 元年이 될 것이다. 이제 南과 北은 통일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1995년은 「統一元年」으로 되어야 한다.”

大統領 新年辭(1992)에서 浮刻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의 元年’과 金日成 新年辭(1991)에서 선언하고 있는 「統一元年」이라는 統一標語들을 보면 可視圈내에 진입한 平和와 統一의 現주소를 잘 읽게 해주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동시가입에 이어 1992년 3월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력에 관한 合意書」(略稱: 基本合意書)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이 發效됨으로써 南과 北은 對決時代의 終焉을 告하고 공식적으로 和解協力時代를 開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은 地球村을 풍미하고 있는 脫冷戰·脫共產·脫分斷이라는 大潮流의 波紋에 힘입은 바 크다.

* 통일연수원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民族 스스로 韓半島冷戰의 壁을 헐기 시작함으로써 民族親和力을 蘇生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몇해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政治奇蹟이라 할 만한 것이다.

지금은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基本合意書라는 커다란 소쿠리를 남북당국이 짜냈으니, 민족구성원 모두가 民族親和力을 용출시켜 民族和合,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가일층 汗을 쏟아 쏟아야 할 때이다.

2.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和解協力の 異程表

基本合意書의 意義

냉전의 마지막 '火藥庫'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예고하는 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남북한을 화해협력체제로 인도하는 '역사적 異程表'라는 점에서 그 채택 자체가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합의서에 담긴 統一志向性, 自主性, 包括性, 實踐性은 두드러진다.

남북관계가 더이상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감정적 특수관계"임을 明文化시킨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平和共存이 現象고착이 아니라 統一에로의 새로운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서는 국제기구나 주변강대국의 중재에 의하지 않고 남북당사자가 직접 민족의 共同利益·繁榮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자주성이 부각되고 있다.

남북한 유연동시가입이 相互의 實體를 인정한 결과라면, 합의서 서명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해결할 남북한 당사자(책임있는 정부당국)가 그 구체적 실천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서는 또 남북간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필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요된 協約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큰 意味를 賦與할 수 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기본합의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형식면에 있어서 前者는 署名主體의 직함이나 雙方 政府當局의 공식國號使用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원수 대신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特異한 單語를 動員함으로써 사실상 同床異夢의 씨나리오를 연상케 한다. 7·4 공동성명은 정부간 공식합의문서 아닌 특수한 型의 合意文件 形式을 취하고 있다.

反面, 後者는 名實相符하게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간의 정부간 공식 합의문서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 雙方 최고 당국자의 비준절차도 거쳤다. 內容面에 있어서도 양자는 큰 差異가 있다.

前者는 統一의 3大原則 合意를 비롯, 比較的 原論的이고 명분적인 7個 合意事項에 그치고 있다. 反面, 後者는 상대방의 制度認定, 破壞顛覆 行爲 禁止를 비롯, 政治·軍事·經濟·社會文化등 제반분야의 합의와 실천을 위한 分科委 및 共同委員會 기구설치합의등 25개 조항의 중요한 세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基本合意書의 內容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基本合意書 서명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和解協力の 制度化'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번 合意書는 상대방 체제인정 및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 和解協力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現 停戰狀態를 남북간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對決狀態解消와 緊張緩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시켜 볼 때, 基本合意書는 停戰協定과 함께 南北 和解協力時代를 規律하는 兩大支柱라 할 수 있다. 過渡統一體制라 할 수 있는 「南北 聯合」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까지 限時的인 合意文書로서 平和共存을 確立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차 頂上會談을 통해 「민족공동체憲章」과 같은 平和統一기본 구도를 담은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이 一種의 국가연합적 성격의 「잠정적」 過渡統一體制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基本合意書는 統一을 위한 前提로서의 平和를 制度化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설정의 異程表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결코 과 소평가할 수 없다.

참고로 基本合意書의 25個 條項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第1章 南北和解

第1條 相對方의 制度 認定·尊重

第2條 相對方의 内部問題 不干涉

第3條 相對方에 대한 誹謗·中傷 中止

第4條 相對方을 破壞·顛覆하려는 一切行爲 中止

第5條 停戰狀態를 남북간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며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軍事停戰協定 遵守

第6條 國際舞臺에서 對決과 競爭을 中止하고 서로·協力하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위해 共同努力

第7條 긴밀한 連絡과 協議를 위해 이 合意書 發效後 3개월 안에 板門店에 南北連絡 事務所를 設置·運營

第8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内に 南北政治分科委員會 構成

第2章 南北不可侵

第9條 相對方에 대한 武力使用 및 武力侵略 禁止

第10條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으로 解決

第11條 不可侵의 警戒線과 區域은 軍事停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과 쌍방이 지 금까지 管轄해 온 區域으로 함.

第12條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해 이 合意書 發效後 3개월 以内に 南北軍事共同 委員會 構成·運營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는 대규모 部隊移動과 軍事演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軍人士交流 및 情報交換問題, 大量殺傷 武器

와 攻擊能力 除去를 비롯한 단계적 軍縮實現 問題, 檢證問題 등 軍事的 信賴
造成과 軍縮實現을 위한 問題 協議·推進

第13條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

第14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內에 南北軍事分科委員會 構成

第3章 南北交流·協力

第15條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등 經濟交流와
協力 實施

第16條 科學·技術, 敎育, 文學·藝術, 保健, 體育, 環境과 新聞, 라디오, 텔레비
전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報道 등 여러분야에서의 交流와 協力 實施

第17條 民族構成員들의 自由往來와 接觸 實現

第18條 離散家族·親知들의 自由로운 書信去來, 相逢, 訪問 實施, 再結合 實現 및
人道的 問題에 대한 對策 講究

第19條 끊어진 鐵道·道路 連結 및 海路·航路 開設

第20條 郵便과 電氣通信 交流施設 設置·連結 및 郵便·電氣通信 交流의 祕密 保障

第21條 國際舞臺에서 經濟·文化 등 여러분야에서 相互 協力 및 對外 共同進出

第22條 合意書 發效後 3개월 以內에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
別 共同委員會 構成·運營

第23條 合意書 發效後 1개월 以內에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構成

第4章 修正 및 發效

第24條 쌍방 合意에 의해 修正 補充 可能

第25條 發效節次를 거쳐 問本 交換日로부터 效力 發生

3. 「基本合意書」以後 時代의 南北韓關係 展望

和解協力時代에로의 進入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이후 南北韓關係는 본격적인 和解協

力時代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南北韓의 政治·軍事·經濟協力 등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상을 진행,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을 확정해야 하며 단순히 戰爭의 不在라는 '消極的 平和'가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協力を 制度化함으로써 실 해 나가는 '積極的 平和'時대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南北韓 和解協力時代를 규율하는 주요 문서로 基本合意書와 기존의 停戰協定の 병존·양립할 것이며, 南北韓이 협상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로서 「南北聯合」을 제도화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文書가 「民族共同體憲章」 등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이후 停戰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유엔軍司令部問題 등도 韓美간의 協議調整을 거침으로서 조만간 새로운 협상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先南北協議 後國際保障」의 次元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연계하여 適切하게 解決될 것으로 展望된다.

南北間 軍縮協商의 本格的 展開

南北韓 和解協力時代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交流·協力の 制度化와 함께 軍事的 緊張緩和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南北韓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軍當局者間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등 運用的 軍備統制의 경험을 바탕으로 構造的 軍備統制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군비감축협상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南北韓의 본격적인 군축협상에 있어서 주요 의제로 공격용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優先除去와 무기감축에 따른 병력감축 등이 부각될 展望이다.

南北韓의 非核化宣言과 北韓의 對日 및 對美修交를 위한 IAEA 核査察 수용이후 南北韓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장차 非核地帶化協定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韓半島 非核地帶化 協定은 南北韓이 서명주체가 되며 美·日·中·獨立國家聯合(CIS) 등 4대 주변강국이(유엔의 이름으로든 관련국임장이로든) 이를 保證(endorse)하는 형식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實質的 統一基盤의 構築

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和解協力이 제도화됨에 따라 남북한간에 對話와 交流·協力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統一에 진일보하기 위한 「南北聯合」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별첨참조 : 남북한 「통일협상」과 관련 북한의 종래의 연방제방안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남북한간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이후 북한사회의 점진적 개방은 北韓經濟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는 또한 社會改革 促進劑로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開放과 民主化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北韓社會의 開放·改革과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발전이 결합되는 경우 統一은 今世紀 末이나 21세기 문턱에 들어선 시기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이 주변 國際情勢變化의 好機를 유효적절하게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고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갈등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外勢의 介入으로 우리가 바라던 統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판단은 북한의 變化를 前提하지 않고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와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분명 變化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變化壓力에 대응하여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變化의 時間差는 있을지언정, 變化 자체를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사료된다.

첫째, 북한의 體制維持를 위한 生存戰略의 最優先的 추구이다.

蘇聯共產黨의 붕괴와 東유럽 共產主義體制的 몰락, 獨逸統一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北韓은 體制維持의 방편으로 現實主義的 路線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北韓은 對外關係改善과 經濟開放을 통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北韓은 對外開放政策에 따른 사상적 汚染과 내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思想教育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中國의 天安門事態와 같은 住民蜂起의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체제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社會的 統制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社會開放過程에서 체제에 저항하는 북한주민들의 봉기가능성을 完全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통제의 한계 및 김일성의 노령에 따른 신상변화에 대비하고 金正日後繼體制 유지를 위해 權力層의 世代交替가 이루어질 것이나, 北韓社會內部로 부터도 急増하는 改革의 要求와 壓力要因으로 「우리식 社會主義」 固守派의 政策路線과 權力基盤에 심각한 危機狀況이 야기될 가능성이 濃厚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國際情勢 變化에 대한 북한의 유연한 對應 움직임이다.

北韓은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實利主義, 脫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社會主義經濟圈의 붕괴, 소련과 중국의 硬貨決濟 요구, 소련의 援助中斷, 그리고 자급자족의 動員經濟體制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北韓은 심각한 經濟難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 美國과 修交하고 동남아, 유럽 등 자본주의국가와 關係改善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차 북한과 일본 미국과의 修交는 한반도 時差承認을 앞당기고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開放과 改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日本의 北韓에 대한 經濟的 영향력 확대를 초래함은 물론 북한은 이러한 日本과의 수교를 통한 경제난 해소를 바탕으로 制度統一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피할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은 주변국가들의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의 형성노력 등 활발한 움직임에 편승, 體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豆滿江地域 등 經濟地區의 지정·개발을 위하여 制限的 開放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개방이든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할 수는 결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對南政策路線의 신중한 變化이다.

北韓은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하나의 조선정책'을 적어도 선전적 차원에서는 변화시키지 않을지 모른다.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難關과 挑戰을 극복하고

김일성이후 김정일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南北韓關係 進展에 상당한 신속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北韓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인식, 北韓의 처해 있는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기존 對南革命路線을 수정, 현상유지적 南北韓 平和共存戰略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北韓은 體制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南韓과의 高位級會談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상 南北韓 經濟交流를 적극 추진시키고 제한적인 通信·通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東獨崩壞에서 얻은 교훈을 감안, 北韓은 자유로운 外部情報의 流入을 봉쇄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다소간 早急한 判斷일지 모르나, 北韓의 核武裝포기를 강요하는 外部로 부터의 壓力에 直面하여 필경 북한은 IAEA에 의한 核査察과 南北間에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상호 사찰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감안할 때, 1993년 이후 실질적인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이 促進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환경도 새로운 局面으로 變換될 가능성이 濃厚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順機能的 豫測은 北韓의 이락화, 北韓内部의 突發的 事態發生이나 對南관계의 反轉惡化狀況이 전개될 경우에는 송두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結 言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우리民族이 이룩하고자 하는 統一祖國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민족이 민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理念과 體制를 떠나 전인류가 추구해야 할 普遍的 價値인 個人的 自由와 民主的 自由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이 統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 모두의 삶이 질을 높이고 幸福의 폭을 넓히려는 데 있다고 할진대, 統一國家의 미래상은 반드시 이같은 要件을 具備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로 가는 中間段階로서 먼저 남북한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共存共榮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 民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급격히 전개되는 統一環境의 변화와 南北韓關係의 현황에 기초하여 앞으로 南北韓關係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도 對南革命路線에 따라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소집주장 등을 내세워 우리사회를 교란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기존태도를 쉽사리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政策混調現狀으로 인한 비정상적 남북한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判斷된다.

북한이 설령 南北和解協力體制를 자기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막으로만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前述한 바와같이, 남북한관계는 유엔 同時加入, 北韓의 制限的 開放, 平和共存·交流協力段階를 거치면서 平和統一의 기틀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황전개 과정에서, 만약 예상외의 突出的 사건이 북한내부에서 발생한다면 北韓體制의 변화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南北韓關係나 統一問題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향후 수년은 民族分斷史에 분수령을 이루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統一方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姿勢와 民主力량의 結集이 더 긴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民主的 政治發展과 持續的 經濟成長 그리고 社會正義의 具現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統一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附錄〉

暫定的 統一로 旋回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評價

－ 過渡統一體制 問題와 관련하여 －

金日成은 1991年 新年辭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祖國統一方途를 확정짓는 것이다.”라고 前提하면서, 既存의 聯邦制主張 특히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과 관련, 우리가 주목해야 할 問題들을 언급한 바 있다.

制度統一과 後代統一論

첫째, 연방제통일 방식과 制度統一 방식의 구별이다. 북한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原則”에 따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聯邦制統一을 내세운 것은 完成型 연방제 통일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잠정적’ 未完成型 연방제 통일모형을 자의로 만들어 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 스스로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남북한정부가 상당기간 공존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是認한 셈이다. 남한이 赤色革命을 통해 북한에 흡수되지 않는한 종래의 聯邦合作方式의 完成型 聯邦制統一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다는 인식을 북한 스스로 露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體制統一(이를 북한은 制度統一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이란 민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 자유선거방식을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體制로서의 民主共和國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통일을 ‘제도통일’로 인식, 연방제통일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도통일'의 課題는 분명 '後代들에게 맡겨도 될' 미래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북한당국이 사실상 사상과 제도가 하나로 된 統一民主共和國의 수립을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종래의 聯共合作的 攻勢的 聯邦制 赤化戰略戰術의 변화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북한정권은 體制·政權의 보전이라는 守勢的 '살아남기 戰略'에 全力投球해야 할 심각한 국면에 봉착해 있음을 감지케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중앙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가 並存하는 것은 平和統一을 위한 중간과정의 平和共存과 過渡的 統一體制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완전한 민주통일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김일성이 구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1995년 통일론'은 제도통일을 미룬 잠정적 통일인 북한식 聯邦制統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도통일은 '상대방을 먹는 것'을 前提로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결코 접수될 수 없는 것으로 완강히 排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吸收統合方式'에 남한이 현혹된 것처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를 강요하려 할 때, '민족적 재난' 즉,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표명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東西獨이 서독주도하의 自由統一을 실현한 데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독일통일을 본 북한당국자들이 북한이 제2의 東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스스로의 被害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金日成이 언급한 '제도통일'은 '자유통일'이요 '흡수통일'이며, '승공통일'로서 多元主義가 허용되고 民主原則에 입각한 自由選舉가 실시된다는 것을 상정할 때, 南韓主導下의 자유민주주의통일과 同義語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多元主義 절대배격에 관한 1992. 1. 3 金正日의 言及(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談話,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 가운데 특히 사상의 자유 반대, 정치에서의 多黨制 반대입장 표명은 「제도통일후대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넷째, 구태여 '後代들' 즉 '다음세대'를 지칭하고 있는것은 現북한의 정치세대에

관한 限, 정치적 통일의 실현보다는 명분상 과도적인 聯邦形式(이는 國家聯合的인 모형에 더욱 가깝다.)의 통일체제에 戰略的 布石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종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條約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잠정적 地域政府權限 強化論

북한이 종래 주장에 변화를 보인 결정적인 부분이 地域政府의 權限強化論이다. 즉 '잠정적으로' '두개의 지역정부'에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립방안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은 종래의 中央政府強化論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地域政府의 權限強化論은 북한의 윤기복 最高人民會議 統一政策審議委員長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는 1991년 4월 28일 IPU총회에 참가한 韓國代表團을 만수대의사당에 초청한 자리에서,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聯邦統一國家를 세우자. 그러나 잠정적으로 地域自治政府에 더많은 權限 즉 外交權, 軍事權, 內政權 등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唯一無二'의 또는 '절대 절명'의 통일강령으로 고집해 온 입장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몇년동안 동구권의 自由化, 독일의 自由統一(Einheit in Freiheit) 및 소련공산체제의 붕괴란 엄청난 地殼變動과 세계적인 민주화개혁의 熱風에 충격을 받은 북한당국이 對南赤化에 힘을 쏟기 보다는 김일성부자세습체제의 生存維持에 더욱 힘을 쏟는 쪽으로 전략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북한은 김일성신년사를 통하여 前例없이 制度統一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後代들'의 시대에 가서야 합의·해결될 미래의 課題가 된다고 주장한 것은, 현

재의 북한의 연방제론의 불가피한 수정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김일성신년사의 내용은 종래의 完成型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잠정적 연방제 실현방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잠정적인 연방제는 일반국제법에서 통용되어 온 국가연합적인 방향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차 南北頂上會談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놓고 민족통일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특히 「南北 聯合」案과 북한측의 修正된 「잠정적 聯邦制」案이 주요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豫想되며,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통일을 이룩하기 전단계인 韓半島 過渡 統一體制의 창설에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기대된다.